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동해시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강원07고5628 5. 등록사항변경란			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명	인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 : 2003-05-07								
정기검사	2017-05-17	2018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삼진		
정기검사	2018-05-25	2019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삼진		
정기검사	2019-05-16	2020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삼진		
정기검사	2020-05-07	2021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삼진		
정기검사	2021-04-28	2022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광남		
정기검사	2022-04-20	2023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박석민		
정기검사	2023-04-21	2024-05-06	안전관리원강원본검사소			김태영		
※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 등록일을 적습니다. ※ 수입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